研究論文

類書 번역본의 출현과 그 어문학적 의의 - 국문본 『彙言』의 자료적 가치 -

양 승 민*

I. 서론

Ⅲ. 국문본『彙言』에 대하여

Ⅱ. 『大東彙纂』에 대한 예비적 검토

IV. 결론: 국문본 『휘언』의 가치와 의의

I. 서론

조선시대에 수많은 類書 및 한자어휘집들이 출현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 유명 유서만 해도 『放事撮要』, 『放事新書』, 『大東韻府群玉』, 『芝峰類說』, 『類苑義寶』, 『新編彙語』, 『萬家叢玉』, 『經史集說』, 『星湖僿說』, 『星湖僿說類選』, 『物名考』, 『五洲衍文長箋散稿』, 『林下筆記』 등을 들 수 있다.1)

類書는 서적이 대거 증가하고 문물의 복잡한 발달과 함께 지식기반이 팽창함에 따라 등장한 일종의 지식정보 콘텐츠로, 무엇보다도 '검색기능'을 중시한 전통적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국문학 전공

¹⁾ 국내에서 유서가 편찬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5세기 이후로, 특히 조선 후기에 대거 출현함으로써 현전 유서만 해도 백 수십 종을 헤아린다. 그 전모가 드러나려면 목록 작성, 해제 집필 이본 현황 파악 및 교감, 각 유서 간의 관계 및 교섭 양상 파악 등 실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국내 유서의 전반적 현황을 다룬 연구 성과로는 다음의 것들이 참조된다. 김윤식,「類書에 대한 서지적 고찰」, 『국회도서관보』, 159(국회도서관, 1982); 장권열, 「우리나라의 고농서: 백과사전류를 중심으로」, 『농업연구소보』, 25-1(경상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1991); 심경호, 「조선후기 한자어휘분류집」에 관하여」, 정양완(외), 『朝鮮後期漢字語彙檢索辭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최환 「한국유서의 종합적 연구(2): 한국 유서의 간행 및 특색」, 『중어중문학』, 32(한국중어중문학회, 2003).

工具書이다. 동양 백과사전의 기원을 유서에 두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유서는 특히 역사가 장구하고 문물이 발달한 중국에서 일찍부터 성행하였지만, 국내에서 도 조선 후기로 들어서는 그러한 책들이 본격적으로 편찬되어 단 한 책 분량으로 부터 수십 책의 거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다수 출현하였다. 중국이상으로 文을 중시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역사와 문물까지 널리 섭렵해야 하는 조선조 국내의 문화환경 속에서 응당 그러한 유서들이 널리 유행했을 터이다.

그렇게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국내 편찬 유서들 가운데 『大東彙纂』이란 것이 우뚝 서 있다. 『대동휘찬』은 18 세기 英祖 연간에 편찬되어 이후 다양한 書名의 필 사본으로 매우 널리 유통된 유서로, 현전 이본만 해도 수십 종을 헤아린다 그 때 문인지 흥미롭게도 자료적 가치가 높은 한글번역본이 전한다. "彙言"이라는 제목의 이 국문본은 일단 유서 번역본이란 점에서 아주 희귀한 자료이다. 유서는 대개野史叢書와 사촌지간인 경우가 많은데, 『조야첨재』, 『조야회통』, 『조야기문』, 『국조고사』, 『정사기람』(원전은 중국본) 등과 같은 책들은 국문번역본이 나왔지만, 공구서들은 사정이 달랐다. 그럼에도 『휘언』에 대해 아직 간략한 해제조차 작성된일이 없기에, 이 글에서 이 국문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국문본『휘언』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한문본에 대한 검토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기실 한문본은 여러 異稱의 필사본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몇 이본들에 대한 각각의 해제가 집필된 일이 있긴 하나, 그들 이본군의 전체 현황 및 상호 관계가 전혀 파악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 편자마저도 잘못 밝혀져 있으며, 국문본이 한문본『대동휘찬』 이본군 가운데 하나를 번역한 것이라는 사실 또한 드러나지 못했다. 이에 우선은 필요한 선에서 한문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하 "大東彙纂"이라는 이름은 특정 이본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전체 이본군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대표서명이기도 함을 미리 밝혀 둔다

II. 『大東彙纂』에 대한 예비적 검토

1. 이본 현황 및 구성 체재

『대동휘찬』은 다양한 이본들이 출현하는 가운데 여러 명칭으로 불려왔다. 필자

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大東彙纂, 彙言, 東圃彙言, 國朝彙言, 朝野彙言, 東錄 등 6종의 서명으로 국내에만도 최소한 29종 이상의 이본이 현전한다.2) 현재까지 조사한 바의 이본 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서명 | 이본 번호 | 권책 수 | 판 형태 | 소장처 | 청구기호 | 주기사항 |
|------|----------|--------|-------|----------|----------------|---------|
| 大東彙纂 | <1> | 25권25책 | 한문필사본 | 장서각 | k2-192 | 완질 |
| | <2> | 25권25책 | 上同 | 규장각 | 奎15744 | 완질3) |
| | <3> | 10책 | 상동 | 장서각 | ₹]K3-688 | 완질 |
| | <4> | 14책 | 상동 | 국립중앙박물관 | 188.5- 취63 | 완질4) |
| | <5> | 1책 | 상동 | 고려대 육당문고 | 육당 B12 A96A 6 | 零本 |
| 彙言 | <6> | 1책 | 상동 | 고려대 육당문고 | 육당 B12 A96 | 抄本 |
| | <7> | 1책 | 상동 | 고려대 | 대학원 E1 A11 | 抄本 |
| | <8> | 1책 | 상동 | 고려대 신암문고 | 신암 E1 A11A 4 | 零本 |
| | <9> | 3권3책 | 국문필사본 | 국회도서관 | 貴952.5 ぎ337 | 選譯本 |
| | <10> | 1책 | 한문필사본 | 규장각 | 想自古 031 G425d | 零本 |
| 東剛彙言 | <11> | 14책 | 상동 | 규장각 | 奎4859 | 완질 |
| 米凹果市 | <12> | 8책 | 상동 | 한국은행 | 없음 | 완질5) |
| | <13> | 3책 | 상동 | 국립중앙도서관 | 古031-30 | 抄本6) |
| | <14> | 13책 | 상동 | 규장각 | 奎11973 | 완질 |
| | <15> | 13권10책 | 상동 | 규장각 | 奎4717 | 완질 |
| | <16> | 1책 | 상동 | 규장각 | 想自古 814.5-G939 | 抄本 |
| | <17> | 18권14책 | 상동 | 고려대 육당문고 | 육당 E1 A9 | 완질 |
| | <18> | 6책 | 상동 | 고려대 만송문고 | 만송 B3 A62A | 완질 |
| 國朝彙言 | <19> | 5책 | 상동 | 고려대 만송문고 | 만송 B3 A62 | 零本 |
| 四知果口 | <20> | 1책 | 상동 | 고려대 신암문고 | 신암 B3 A62A | 零本 |
| | <21> | 1책 | 상동 | 고려대 신암문고 | 신암 B3 A62 5 | 零本 |
| | <22> | 1책 | 상동 | 국립중앙도서관 | 한古朝31-78 | 零本 |
| | <23> | 1책 | 상동 | 국립중앙도서관 | 古2150-54 | 抄本 |
| | <24> | 15권15책 | 상동 | 성균관대 | | 완질 |
| | <25> | 15권15책 | 상동 | 이화여대 | 고서 080 국85 | 완질(?)7) |
| 朝野彙言 | <26> | 8책 | 상동 | 규장각 | 奎4914 | 완질 |

^{2) 『}韓國古書綜合目錄』(국회도서관, 1968)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에도 8 종의 이본이 전한다 또한 국내 개인소장본도 몇 종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 | <27> | 14책 | 상동 | 규장각 | 古5120-46 | 완질 |
|----|------|-----|----|-----|----------|----|
| 東錄 | <28> | 14책 | 상동 | 규장각 | 奎6303 | 완질 |
| | <29> | 14책 | 상동 | 규장각 | 奎15553 | 완질 |

『대동휘찬』이본군은 이렇듯 6종이나 되는 서명이 출현하였지만, 기실 저들은 이름만 다를 뿐 다 같은 책이다. 일단 이같은 이본의 분포 현황만을 보더라도 『대 동휘찬』은 매우 널리 유통된 類書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전 이본들의 서명과 종류[數] 만으로 보아서는 조선조 類聚書 가운데 가장 널리 읽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국내의 유명 類書 상당수가 刊本이 나온 것과 달리 이 책은 모두 필사본으로만 전한다. 印本이 없다보니 저렇듯 다양한 이본들이 출현했을 터이다.

위의 이본들은 물론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고 있지만, 완질 형태의 이본 가운데에서도 가장 善本인 것을 택해 그 표본적 체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장 선본에 속하는 것은 "大東彙纂"이라는 제목의 장서각 소장 25 책본(이본 <1>)으로,일단 이 이본은 9개 부문 171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25 책본의 각 부문별 항목명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君道門: 聖孝(友愛附), 后妃, 廢妃, 後宮, 嚴宮闡, 儲嗣, 敦親, 宗室儀賓, 戚里, 治道, 勤政, 經筵, 寬仁, 紀綱, 儉德, 斥玩好(玩物), 敦教化, 鎮人心, 軫民隱, 愼賞罰, 惜名器, 待前朝, 崇儒, 養士氣, 斥左道, 褒節義, 禮臣工, 待三司, 優老, 符瑞, 災異, 遇災修省, 悔悟, 宮房, 內司, 國史, 靖難(이상 37 항)
- ② 臣道門: 勳臣,權勢,權奸,士禍,黨禍,宦寺,臣分,80 君臣際遇,去就,忠義,氣節,節義,居官,善處事,宦途,致仕(怡退附).(이상 16 항)90

³⁾ 이본 <2>는 이본 <1>을 저본으로 1930년에 전사한 後寫本이다.

⁴⁾ 이본 <4>는 필자가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으나, 이동환 선생이 집필한 이본 <3>에 대한 해제에 따르면 완질본이다. 「귀중도서해제: 휘언」, 『국학자료』2(장서각, 1972); 장서각 홈페이지 (lib.aks.ac.kr)의 『휘언』 해제 참조

⁵⁾ 이본 <12>는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다. 다만, 해제에 따르면 완질 형태의 이본이다. 『한국은행고 서해제』(한국은행, 2001) 참조 이하 이 한국은행본에 대한 정보는 이 해제에 의거한 것이다

⁶⁾ 표제가 "圃彙"로 되어 있으나 '東圃彙言'으로 보아 여기에 귀속시킨다 책 속에는 卷首題나 卷末題 등 다른 서명이 없다.

⁷⁾ 이본 <25>는 확인해 보지 못했다. 다만, 권책수로 보아 완질 형태로 추정된다.

⁸⁾ 다른 이본들에는 대개 '臣道'라고 되어 있다

- ③ 人事門: 禍福, 炎凉, 請託, 處變, 嫌路, 復讐, 文章, 書翰, 文集, 碑誌, 雜術, 靈 異, 報應, 雜考, 孝友, 學問, 制行, 德量, 膽量(定力的), 識慮, 先見的, 鑑識 清 儉, 奢侈, 辭受, 高士, 豪放, 聰明, 夙成, 儀容, 謙退, 愼默, 氏族, 家法, 朋友, 風習.(이상 35항)10)
- ④ 吏部門: 銓法,官制,用人,抑躁競,大臣,廟堂,講官,啓沃,臺閣,諫諍,論劾,宫僚、輔導、文任、湖堂、方伯、守令、吏胥(이상 18 항)
- ⑤ 戸部門: 疆域, 田政, 堤堰 ¹¹⁾ 民賦, 漕運, 良役, 貨幣, 場市, 禄俸, 恤經費, 賑恤, 貨賂(°) と 12 む)
- 6 禮部門: 廟社, 陵寝, 祭享, 音樂, 追崇, 國恤, 喪制, 國婚, 文廟, 太學, 書院, 科學, 考官,12) 諡法, 私家禮制, 典禮故事, 朝體, 朝儀故事, 盛際故事, 事大, 詔使 (儐相附), 使价, 交隣, 譯舌(이상 24 항 13)
- [7] 兵部門: 將帥, 兵制, 鍊武詰戎, 征討, 修攘, 邊備, 邊禁, 烽燧, 軍器, 城池粮餉 馬政, 驛路, 戰船, 武科(이상 14 数)
- 图 刑部門: 法禁 刑獄 恩法屈伸 竄謫 籍沒 離婚 降號革邑 伸寃枉(이상8 す
- ⑨ 工部門:制作故事,建置故事(沿革附), 營建,第宅,服飾,器用,津船(이상7 항

이렇듯 『대동휘찬』은 일단 크게 門目을 세운 다음 다시 그 아래에 여러 작은 항목들을 귀속시키는 類書의 전통적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 이같은 분류체 재는 이미 중국의 『玉海』와 『事文類聚』에서 선보인 것으로, 이후 국내에서 金晉 (1585~?)의 『新編彙語』(『新補彙語』, 59권 13책)를 비롯해 『文字類輯』(1책), 『萬家叢玉』(12권 6 책), 『經史集說』(15 권 7 책) 등 각종 類書들에서 종종 따랐던 방식이다.14)

⁹⁾ 다른 이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돼 있다. 臣道, 君臣際遇, 去就, 忠義, 氣節, 節義, 居官, 善處事, 宦途, 致仕(恬退附), 勳臣, 權勢, 權奸, 士禍, 黨禍, 宦寺.

¹⁰⁾ 다른 이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돼 있다. 學問, 孝友, 制行, 德量, 膽量 定力附, 識慮 (先見附), 鑑識, 清儉, 奢侈, 辭受, 高士, 豪放, 聰明, 夙成, 儀容, 謙退, 愼黙, 氏族, 家法, 朋友, 風 習, 禍福, 炎凉, 請託, 處變, 嫌路, 復讐, 文章, 書翰, 文集, 碑誌, 雜析, 靈異, 報應, 雜考

¹¹⁾ 다른 이본들에는 대개 이 '堤堰'이 없다. 단, 이본 <14>에는 보인다

¹²⁾ 다른 이본들에는 대개 이 '考官'이 없다. 단, 이본 <12>와 <14>에는 보인다.

¹³⁾ 다른 이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돼 있다. 廟社, 陵寢, 祭享, 音樂, 追崇, 國恤, 喪制 國婚, 典禮故事, 朝體, 朝儀故事, 盛際故事, 事大, 詔使 儐相附, 使价, 交隣, 譯舌, 文廟, 太學, 書 院, 科學, 諡法, 私家禮制

위의 9개 부문 171개 항목 속에 분류 기술된 각 칙의 기사들은 최소한110 종이상의 기존 문헌들에서 간추린 것들이다. 대다수 이본들의 卷首에는 110종의 <引用書目>이 제시돼 있고,15) 본문의 매 칙마다 끝에 출전을 밝혀 놓았는데, 각칙에 적힌 출전이 앞의 <인용서목>에는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로 미루어 『대동휘찬』이 편찬되는 데에는 110종의 <인용서목>보다 훨씬 더 여러 종의 문헌들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6) 인용된 문헌들은 대략 史書, 野乘, 야사, 類書, 필기, 야담, 잡록, 잡기, 패설, 일기, 언행록 등으로 지칭될 수 있는 것들로, 실제로 『대동휘찬』에 집성된 기사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事蹟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술 경향을 잘 보여주는 『지봉유설』이 그러하듯,17)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잡학적 관심이 가득 담긴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¹⁴⁾ 참고로, 유명한『新編彙語』의 門目만을 들면 다음과 같다. 乾道門, 坤道門, 萬物門, 人倫門, 儒道門, 君道門, 臣道門, 天官門, 地官門, 春官門, 四禮門, 夏官門, 秋官門, 冬官門, 百用門, 人事門, 服食門.

¹⁵⁾ 단, 이본 <1>(장서각 소장 25 책본)에는 오히려 이 인용서목이 없다 다른 이본들의 卷首에 적힌 <인용서목>은 다음과 같다. 國朝寶鑑 宣廟寶鑑 肅廟寶鑑 櫟翁稗設 龍飛御天歌 太平閑話 筆苑 雜記,慵齋叢話,彛尊錄,石潭日記,聽天雜錄,圃樵雜說,懲毖錄,雲巖雜錄,清江小說,梧陰雜說,月 汀邊錄、甲辰漫錄、聞韶漫錄、青坡劇談、秋江冷話、陰崖雜記、龍泉談寂記、思齋摭言、稗官雜記、謏 聞瑣錄,退溪言行錄,破閑雜記,眉巖日記,東閣雜記,松窩雜記,答川雜記,寄齋雜記,象村野言,五 山說林、丁戊錄、白沙北遷錄、晚雲日錄、識小錄、於于野談、月窓夜話、芝峯類說、延平日記、柳川箚 記,樂全堂漫錄,再造藩邦志,畸翁漫錄,竹窓閑話,荷潭破寂錄,南溪記聞,崇孝錄 日月錄 青野漫 輯、艮齋漫錄、公私見聞、因繼錄、閑居漫錄、感異編、後自警篇 涪溪記聞 癸甲錄 隱峯野史,建州聞 見錄,長貧胡撰,己卯錄,海東名臣錄,冶谷三官記, 閑溪漫錄, 眉叟記言, 國朝典謨,海東樂府,東儒 師友錄、前言往行錄、鵝城雜說、菊堂俳語、雪壑諛聞、晴牕軟談、逸事記聞、續玉露、鯸鯖錄、朝野記 聞,國朝記事,紫海筆談,亂乘,續雜錄,歷代摠要,歷代摠目,歷代摠錄,瀋陽日記,戊寅記聞,壬辰雜 事、蘇齋日記、海平家傳、安氏追錄、辛永禧師友錄、白沙手錄、己丑記事、松江時政錄、喉院便覽、隨 錄、野言別集、國朝謀烈、瑣說、亂離日記、大東韻玉、壬癸行朝錄、南官錄、景賢錄、丙辰丁巳錄、玄湖 瓊談 이들 인용서목은 대다수 이본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애당초 편자가 정리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전사본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 면 이 인용서목이 없는 이본 <1>은 다름 아닌 원본 계열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뒤에 서 살피겠지만, 이본 <1> 은 유일하게 저자의 自序가 실려 있는 이본이어서 원본 계열에 가장 가 까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¹⁶⁾ 이동환 선생의 이본 <3>에 대한 해제에 따르면, <인용서목> 110종을 포함해 대략 260 여종의 문헌이 활용되었다고 한다(「귀중도서해제: 휘언」, 앞의 책 참조). 필자는 아직 각 칙마다 밝혀져 있는 인용서목들을 일일이 세보지 못했는데, 『대동휘찬』 편찬에 활용된 문헌들을 다 조사해 정확한 총 서목을 작성하는 등의 일도 필요한 과제이다.

주목되는 특징으로는 각 이본들의 서명이 말해주듯 기본적으로 '조선의 사적 위주로 집록돼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간혹 중국의 기사나 고려시대의 것들도 확인되나 이는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각 항목별 매 칙들은 더러 바뀐 곳도 있긴 하지만 대개 왕조순이나 연대순으로 배열돼 있다. 각 항목별 기사 수는 적게는 5칙 미만에서 많게는 20 내지 30칙 이상으로 일정치 않다 그리고 하한선은 肅宗朝이다.18)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유명 인물들의 언행에 얽힌 일화가 유달리 많이 수록돼 있어, 野史叢書로서의 성향도 다분히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찾아보기' 기능을 중시하는 가운데 '토막 기사'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工具書 형태의 책이란 점에서 일반적인 야사총서와는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형식적 체재뿐만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왕조별 정치사 또는 正史 중심으로 서술되는 야사총서와는 상당히 다르다. 여타 類書와 마찬가지로 史料的 기능을 중시한 채 편찬된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類書 본연의 성격에서 벗어나 있는 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전 이본들 간에는 편차가 심하다. 零本이나 抄本들은 논외로 하고, 우선 완질의 모양새를 취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완질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部門 및 항목의 배열 순서 또한 일정치 않다. 예를 들어, 규장각 소장 『동포휘언』14 책본 (이본 <11>)의 경우 工部門 전체가 누락돼 있으며, 한국은행 소장 『동포휘언』(이본 <12>)에도 戶部門이 통째로 빠져 있다. 또한 규장각 소장 『조야휘언』 8 책본 이본 <26>)은 臣道門이 없는 데다 다른 부문 매 항목 내에도 빠진 기사들이 많으며, 성균관대본 『국조휘언』(이본 <24>)에도 臣道門과 工部門이 없는 상태다. 그런가하면 고려대 소장 『국조휘언』 18권 14 책본(이본 <17>)은 매 항목 내의 각 칙들이 종종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工部門의 경우 제18권 첫 면에 각 항목 이름들은 다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制作故事'와 '建置故事(沿革)'에 속하는 기사들만 있고 營建, 第宅, 服飾, 器用, 津船에 해당하는 각 칙들이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이 이본에는 人事門이 臣道門보다 앞서 수록돼 있다. 한편, 고려대 소장 『국조휘

¹⁷⁾ 안대회,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 후기 名物考證學의 전통」, 『진단학보』, 98(진단학회, 2004).

¹⁸⁾ 단, 臣道門「勳臣」조에서 영조조의 기사 하나가 확인된다. 「今上戊申 策奮功臣吳命恒等十五人 以 討平李獜佐朴弼顯等功也」(출전 없음). 이는 戊申亂(이인좌의 난) 관련 기사로, 여기서 '今上戊申 은 영조 4년(1728)을 가리킨다.

언』 6책본(이본 <18>)은 行草를 뒤섞어 전사한 이본으로, 冊數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완질의 형태를 띠고는 있다. 단지 6책에 그치는 이유는 매 면의 字體가작고 行數가 많기 때문으로, 특별히 어떤 部門이 통째로 누락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항목별로 빠진 기사들이 매우 많아 기실 권책수만 완질일 뿐이다. 그런가하면 상당히 善本에 속하는 장서각 소장 10책본(이본 <3>)마저도 각 항목 중간중간에 누락된 칙들이 종종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門目과 項目의 순서, 항목의 수 등이 일정치 않다는 점이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가장 선본에 속하는 장서각 소장 25 책본(이본<1>)의 경우 총 9門 171項으로 편성된 가운데 '人事門'이 세 번째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人事門 이 마지막에 위치한 이본이 더 많으며, 각 부문 내에서의 항목 순서 또한 앞서 각주에서 밝힌 것처럼 서로 다르게 배열돼 있다. 또한 戶部門에 속해 있는 '堤堰과 禮部門' 아래 '考官'의 경우 대다수 이본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堤堰과 '考官'이라는 항목은 장서각 소장 25책본 이외에는 규장각 소장 『국조휘언』13책본 (이본 <14>)과 한국은행본 『동포휘언』(이본 <12>)에만 보인다.19) 門目의 순서가「君道, 臣道, 吏部, 戶部, 禮部, 兵部, 刑部, 工部, 人事」로 편재돼 있고, 9문 169항으로 구성된 이본들이 제일 많이 나타난 셈이다.

『대동휘찬』이 세간에 썩 널리 유통되는 가운데 여러 이본을 거느린 점을 고려할 때 상호 편차가 심한 이본들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일 터다. 문제는 일단善本을 가려내는 일이다.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 당장 현전 이본들을 일일이 대조해 온전한 내용을 별도로 재구해 내기는 힘들더라도, 우선은 국문본 『휘언』(이본 <9>)에 뽑힌 각 칙들을 漢文 저본과 모두 대조해보기 위해서라도 善本을 골라낼필요가 있다. 뒤에서 살피겠지만, 국문본의 경우 분류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한문본 전반의 각 처에서 선별하여 번역한 이본으로, 한문본 전체를 일일이 뒤적이며 그들 국문본 각 칙의 저본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다, 어느 한 종의한문본만을 갖고는 아예 찾을 수 없는 기사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교적

¹⁹⁾ 단, 한국은행본은 戶部門이 통째로 빠진 이본이어서 '堤堰은 아예 확인 불가능하고 禮部門의 '考官'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규장각 소장 『국조휘언』13 책본에 '堤堰 과 '考官'이 있어 『대동휘찬』25책본과 동일 계열의 이본일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국조휘언』13책본은 『대동 휘찬』25책본과 달리 人事門이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 한국은행본에도 人事門이 마지막에 수록 돼 있다.

선본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국문번역본과 대조하기에 좋은 이본으로는, 장서각 소장 25책본 『대동휘찬』(이본 <1>)을 비롯해, 장서각 소장 『휘언』 10 책뵧 이본 <3>), 규장각 소장 『국조휘언』 13 책본(이본 <14>), 규장각 소장 3 종의 14 책본 『동록』(이본 <27> <28> <29>) 등을 들 수 있다²⁰⁾ 국문본에 수록된 각 칙의 기사들은 이들 이본을 통해 대부분 확인 대조해 볼 수 있다²¹⁾

덧붙여, 국문본과의 대조를 위해 제일 먼저 잡을 만한 이본은 그래도 最善本으로 꼽히는 "대동휘찬"이라는 제명의 장서각 소장 25책본이다. 이 25책본은 매 칙의 首字를 올려쓰기(내어쓰기) 형태로 필사한 데다 매우 정성스럽게 엮은 淨寫本이란 점에서 일단 검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사실 25책이라는 책 수는 각 책권의 張數가 다른 이본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데 따른 수치여서 별 의미는 없다. 그래도 이 이본은 가장 많은 칙의 기사가 실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실 국문본에 뽑힌 대다수 한문 원전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 25 책본도 완전한 이본은 아니다. 예컨대, 次善本 정도로 꼽히는 장서각본 『휘언』(10책, 이본 <3>)과 대략 대조해본 결과 되려 25책본에 누락된 기사들이 간혹 나타난다 22) 더욱이 국문본에 수록된 모든 칙의 한문 원전을 25 책본에서 다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선본들을 참조해야 한다.

2. 編者 문제

『대동휘찬』이본군에 대한 기왕의 해제들을 살펴보면 그 편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서각본 『휘언』(이본 <3>)에 대한 해제에서는 편자 미상이라고 했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휘언'조에는 金始炯이라고 밝혀져 있다. 또한 같은 사전 '동포휘언'조에는 金時敏이라고 밝혀 놓았고, '국조휘언'조에서는 편

²⁰⁾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으나, 국립중앙박물관본 『휘언』(14책, 이본 <4>)도 선본일 것으로 추정 된다.

²¹⁾ 국문본 『휘언』에 뽑힌 기사는 총 344칙인데, 이 가운데 7 개에 대한 한문 원문은 여러 이본들을 뒤져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 어느 것인지 뒤의 국문본을 살피는 자리에서 밝히겠다. 뒤의 도 표 참조.

²²⁾ 이로 미루어 25책본은 비록 유일하게 편자의 自序가 실려 있다 해도, 내용상 원본 그대로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 단지 원본에 가장 가까운 한 계열의 이본일 뿐이다

자 미상이라고 했으며, '조야휘언'조에는 金時敏으로 밝혀져 있다. 그런가 하면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에 수록된 『동포휘언』, 『국조휘언』, 『조야휘언』, 『동록』 등에 대한 각각의 해제에서는 그 편자를 김시민으로 밝히거나 미상으로 처리해 놓았다. 『한국은행고서해제』에도 『동포휘언』(한국은행본)의 찬자가 김시민으로 기술돼 있다. 물론 각종 고서목록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여러 이본들 가운데 고려대본 『휘언』(이본 <7>)의 경우 그 첫 면 하단에 "金始炯 輯"이라고 적혀 있는데, 『휘언』에 대한 해제에서 그 편자를 김시형이라고 기술하기도 한 것은 여기에 근거한 결과로 보인다. 종종 편자 미상으로 처리했던 이유는 『대동휘찬』이본군 대다수에는 그 편자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편자를 김시민(1681~1747)으로 밝혀 놓은 해제가 가장 많은데, 이는 그의 호가 '東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3) 또한 『동포휘언』을 동포 김시민의 저술로 간주하는 가운데 다른 서명으로 되어 있는 이본들이 그것과 異名同書임이 확인되자 마찬가지로 그 편자를 김시민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시형과 김시민은 『대동휘찬』이본군의 편자가 아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는 廣陵居士 南泰良을 꼽을 수 있다. 이는 "大東彙纂"이라는 제목의 장서각소장 25책본(이본 <1>)을 통해 알 수 있다. 25 책본에는 그 卷首에 편자의 < 自序가 실려 있는데, 廣陵居士 南泰良이 종래의 국내(조선조) 史書 및 諸家들의 서책을 가려 뽑아 애당초 "大東彙纂"이라는 제목으로 건륭 39년(1774, 영조 50)에 이 책을 완성했음이 확인된다.24)이로 보아서는 『대동휘찬』이본군의 원 편자는 일단남태량임이 확실하다. 지금까지는 25책본 "대동휘찬"이 그 다양한 異名同書 가운

²³⁾ 안동 김씨. 金昌協・金昌翕의 문인 현재『東圃集』이 전하며 여기에 그의 행장이 실려 있으나『 동포휘언』 관련 기록은 없다. 사실 '東圃彙言'이라는 서명은 金時敏의 '東圃'라는 호와는 무관하다. 여기서의 '圃'는 '野'를 뜻하는 글자로, '東圃'는 '동국의(조선의) 아사'라는 일반명사로서의 뜻을 나타낸다. '朝野彙言'이나 '國朝彙言'과 같은 서명들과도 뜻이 상통한다.

^{24)「}大東彙纂自序」. 檀君握三印而創國家、箕師設八教而教國人, 上下數千載之間, 間或有世道之治亂 人物之臧否, 而典章無據, 姓名無聞, 蓋史家之不述而然也 史者記事也 故國必有史, 家亦有史, 史烏乎無?無則與無國無家同, 後之人安能徵世道之治亂・人物之臧否, 爲百世之龜鑑者乎, 惟我太祖, 以神聖文武之姿, 創業垂統, 典章文物禮樂刑政, 粲然俱備, 猗歟休哉, 三皇可四, 五帝可六, 列聖以之而承繼, 良臣以之而遵守, 迄今四百餘年, 邦錄靈長, 賢材輩出, 國史記之, 野史錄之, 君臣間良法美規, 人事上嘉言善行, 與夫六曹之條例, 無不蒐羅而括搜之, 可以觀治成制定化行俗美者矣, 余因病閉戶數月, 遂採史氏之所述, 諸子之所撰, 分類成編, 名曰大東彙纂, 其於勸善懲惡, 庶可有補, 而若其史之有闕文, 則以俟後之君子焉, 乾隆三十九年甲午八月上浣, 廣陵居士南泰良識

데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그들 이본군의 편자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셈이다.

"廣陵居士 南泰良"과 이름이 같은 사람으로는, 영조조의 문신 南泰良(1695, 숙종 21~1752, 영조 28)이 있다 『국조방목』에 따르면 그는 관향이 宜寧이고 字가 幼能으로, 父는 南梯明, 生父는 南孝明이다 廣州부윤과 한성부윤 등을 지낸 南泰溫(1691~1755)의 아우이기도 하다. 영조 3년(1727) 증광시 丙科 출신으로, 『승정원일기』와『영조실록』을 통해 남태량의 官歷을 살펴보면, 假注書, 정언, 지평, 居山察訪, 수찬, 교리, 헌납, 장령, 사간, 안동부사, 응교, 호남어사, 호서안핵사, 대사간, 승지, 대사성, 경상도관찰사, 대사헌, 도승지, 좌윤, 經筵同知事, 이조참판, 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영조 6년부터 7년까지 서장관으로 청나라 연경에다녀왔으며 동왕 25년에도 副使로 연경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나아가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그는 廣州에서 卒했다고 했다.25)『영조실록』에는 그의 卒記가 실려 있는데,26) 작고할 당시 도성 밖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27)'廣陵은 경기도廣州의 별명으로, 그는 廣州에 살면서 호를'廣陵居士'라 했을 법하다 28)

다만, 남태온의 아우인 이 남태량이 25책본 <自序>에 적힌 "廣陵居士 南泰良" 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자서>를 쓴 年紀가 '건륭 39년 甲午,' 즉 영조 50년(1774)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남태량은 영조 28년

^{25) 『}승정원일기』영조 28년 3월 14일조 三月十四日末時,上御崇文堂. (중략) 益炡(禮曹判書 李益炡-필자)曰, "聞宰臣南泰良卒逝云矣" 上驚聽曰, "死於何地耶 今番入來耶" 益炡曰"未果入來矣 承 世孫薨逝之報, 驚心痛悼, 連日行素之際, 食海衣猝然關格, 死於廣州地云矣" 上曰, "可惜矣"(원전 제1080책, 탈초영인본 제59책).

^{26) 『}영조실록』 28년 3월 15일조 전 참판 남태량(南泰良)이 <u>餐</u>, 역 하였다 하교하기를 " 재산 宰臣 남태량은 굳은 지조로 마음을 가져 한번 일을 당한 뒤로는 시골에 내려가 있었다. 이번에는 틀림 없이 도성에 들어오려니 했는데 이미 작고하였다니, 아픈 마음을 어디에 비하랴, 규례에 따라 치부(致賻)한 이외에 본군으로 하여금 상수(喪需)와 제수(祭需)를 특별히 돌보아 주게 하라." 하였다(『CD-ROM 국역조선왕조실록』 제3집).

²⁷⁾ 任希聖(1712~1783)이 撰한 南泰溫의 행장을 보면, 남태온의 부인인 전주이씨의 묘를 광주에 썼다가 후에 남태온이 졸서하자 파주 묘소에 안장하면서 합장하였다. 임희성(찬),「外舅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南公行狀」,『在澗集』,『한국문집총간』230, 517~520쪽. 이로 미루어 경기도 廣州는 남태온・남태량 형제의 集居地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광주에 의령남씨 집성촌이 있다.

²⁸⁾ 남태량(남태온의 아우)에 대한 정보는 유명 인명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다. 단, <신종우의 인명사전>이라는 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jongwoo.co.kr) 상의 '의령남씨' 콘텐츠에는 그의호가 '廣陵居士'로 기입돼 있다. 어느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는 미상이다

(1752, 건륭 17년)에 사망했으므로, 卒年으로 따져도 < 자사에 적힌 年紀와는 22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때문에 바로 그 南泰良이 25 책본 < 자사를 쓴 주인공이라고 확정짓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廣陵居士 南泰良'과 남태온의 아우 남태량은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편, 몇몇 문헌기록에는 『대동휘찬』이본군의 편자가 영조조의 문신 金始煒로 밝혀져 있다. 우선 『弘齋全書·群書標記』에 따르면, 『彙言』은 정조의 주도로 이루어진 『人物考』(130권, 필사본) 편찬에 활용되었던 여러 문헌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찬자가 金始煒로 밝혀져 있다.29) 그런가 하면 이긍익(1736~1806) 의 『연려실기술』에는 野史類 文藝典故 가운데 하나로 "東圃彙言 金始煒"라고 들어 놓았으며 30) 이덕무(1741~1793)의 『청장관전서』에서는 "東圃彙言: 金時煒가 지었다 國朝의 典章에 대해 매우 정밀하고 요긴해 史家를 보충함이 있다"31)고 했다. 또한 이규경(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청장관전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혀 있다.32) 이 때 『청장관전서』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경우 『연려실기술』에 적힌 '金始煒'와는 달리 '金時煒'라고 표기돼 있는데, '時'는 '始'의 誤記로 간주된다.

金始煒(1694~1767以前)는 강릉김씨로, 字가 季文이며, 金得元의 손자이자 金弘 機의 아들이다. 『국조방목』에 따르면 영조 6년(1730) 庭試 문과 출신이다. 사간원 正言과 사헌부 持平을 지낸 바 있고, 영조 15년(1739) 당시 지평으로 있으면서 直 言으로 한때 유배되었으나 재차 등용되어 이후 동부승지까지 지냈다. 문과 출신으 로는 벼슬길이 순탄치 못했던 사람이다. 앞서 고려대본 『휘언』(이본 <7>)에 그 편 자가 金始炯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김시형(1681~1750)은 다름 아닌 이 김시위의 사촌 형으로, 金得元의 손자이자 金弘柱의 아들이다 역시 문과 출신으로 병조판서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33) 이 김시형이 『휘언』 편자로 알려지

²⁹⁾ 秘府,舊有故相李宜顯所編人物考,取舍失之太簡,體裁亦欠疏觕 予取柳馨遠之興地志,金堉之海東名臣錄,宋成明之國朝名臣錄,金始煒之彙言,與凡太常所載諡狀之屬,互相參照,補苴脫漏(『弘齋全書』 권182,群書標記 御定 人物為.

^{30) 『}燃藜室記述』 별집 권14.

³¹⁾ 東圃彙言: 金時煒撰, 國朝典章, 極其精要, 有補史家(『青莊館全書』 刊54, 盎葉記一 東國史).

³²⁾ 東圃彙言: 金時煒撰, 國朝典章, 極其精要, 有補史家(『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4 사격류 1 史籍 總説).

³³⁾ 김시위와 김시형의 계보는 강릉김씨 서울종친회(kangkim.or.kr)에 구축된 인터넷족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영조실록』을 통해 김시위의 정치적 이력을 대략 파악할 수 있으나 文集

기도 한 이유는 김시위와 사촌지간으로 인해 어떤 착오가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동휘찬』을 편찬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선, 25책본 『대동휘찬』의 경우 유일하게 편자의 <自序>가 붙어 있는 이본이라고 했다 때문에 비록 원본 그 대로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가장 가까운 계열의 이본임에는 거의 확실하다는 점이다. 유독 <인용서목>이 없는 이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앞서 밝혔듯 다른 이본들의 卷首에 보이는 그 <인용서목>(110종)은 본문의 실제 출전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정리된 것이다. 그것들은 훗날 轉寫 과정에서 대략 추기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러한 <인용서목>이 없는 25책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 이본임을 뜻한다. 이에 그 25책본에 실린 <자서>를 준신한다면, 『대동휘찬』 이본군의 원 저술자는 "廣陵居士 南泰良"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영조 3년 증광시 출신의 그 南泰良(남태온의 아우)과 同名異人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할 뿐이다

필자는 일단 동일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남태량은 廣州 廣陵 에 거주했음이 분명하기에, 25책본 < 자사 에 적힌 '광릉거사 남태량 을 하필 다른 인물로 간주하는 것은 오히려 석연치 않다고 본다. 더구나 남태량은 史官을 지냈을뿐 아니라 오랫동안 사헌부, 사간원, 승정원 등과 같은 중앙정부기관에서 두루 관직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즉, 그와 같은 경험과 官歷은 특히 자료수집 면에서 『대동휘찬』과 같은 성격의 책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 퍽 유리하게 작용했을 터이다. 물론 그 < 자사 > 의 年紀가 어떠한 연유로 卒逝 22년 뒤인 "乾隆三十九年 甲꾸 로적히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아마도 轉寫 과정에서 와전 또는 추기된 것이 아닐까?

덧붙여, 김시위를 편자로 간주하려면 25 책본의 < 자사 가 僞書임이 판명되어야 할 것이다. 몇몇 문헌에 김시위가 편자로 기록된 이유는 당시 다양한 이본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김시위 전사본'이 나돌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 이본들이 유통되는 가운데 편자가 김시위로 와전되어 더 널리 알려진 결과로 추정된다.

III. 국문본『彙言』에 대하여

1. 서지사항

『대동휘찬』은 1752년(영조 28) 이전에 편찬되었거나, 혹은 1774년(영조 50)에 완성된 책이다. 이 類書는 이후 한문필사본 이본군의 광범위한 유통과 함께 국문본까지 출현하게 되었다. 앞서 보인 이본 현황 가운데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3권 3 책본(이본 <9>)이 그것으로, 이 국문본은 한문본 각 항목의 기사들을 譯者 나름대로 간추려서 編譯한 이본이다. 卷首題가 "휘언"이며, 표지에는 한자로 "彙言"이라고 적혀 있다. 흘림궁체 필사본으로, 매면 10항, 매항 17자 안팎으로 필사돼 있으며, 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달필의 淨寫本이다. 각 칙의 고사를 쉽게 구분해가며 읽을 수 있도록 매 칙마다 항을 바꾸어 썼으며, 특히 매 칙마다 끊 모양의문양을 정성스럽게 찍어놓은 善本이다. 각 권의 분량은 권지일(제 책) 61 장(122 면), 권지이(제2책) 66장(131면), 권지삼(제3책) 67장(133면)으로 되어 있다. 기타특기 사항으로는, 한문본에 설정된 部門과 항목의 체재를 따르지 않고 단지 권을나누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分卷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 단지 책의 분량 정도만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종대의 한문본에는 매 칙마다 반드시 출전을 밝혀놓았으나, 이 국역본에서는 그것들을 하나도 들어놓지 않았다.

이 국문본은 본문 이외에는 序跋이나 年紀 등 어떤 기록도 없다. 때문에 번역자나 번역시기를 알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다만, 달필의 궁체 정서본인 데다 매 칙마다 문양(章)을 찍어 매우 정성스럽게 전사한 이본이란 점에서 궁중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식수준이 높은 사대부 남성에 의해 번역되어 궁중에서 유통되다가 士家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는 단지 추정일 뿐이고, 현소장처인 국회도서관으로 입수된 경로 또한 미상이다.

그런가 하면 이 국문본은 문양(葉)을 찍어 매 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종종 착오를 일으킨 곳들이 확인된다. 어떤 것은 단순히 문양을 빠트리거나 엉뚱한 곳에 찍어놓은 경우이고, 어떤 것들은 아예 칙 구분을 잘못해 놓았다. 이는 번역 및 필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한문본과의 대조를 통해 파악해낼 수 있다. 그러한

오류를 지적하거나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권지일, 제41칙, 55쪽34)

"효묘됴의~"로 시작되는 기사 위에 문양이 찍혀 있지 않다 그러나"효묘됴의 ~"부터 새로운 칙이다.

② 권지일, 제52칙과 53칙, 65~67쪽.

이 두 칙은 한문본에는 하나로 되어 있다. 내용상 기실 2개의 기사인데, 국문본에서는 그래서 칙을 아예 나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오류라기보다는 칙 구분이 달라진 경우이다.

③ 권지이, 제63칙과 64칙, 57~58쪽.

위의 ②와 같은 경우이다.

4 권지이, 제71칙, 69쪽

외형상 70칙과 71칙이 하나의 기사처럼 연달아 필사돼 있다. 그러나 제70칙을 읽다보면 돌연 다른 내용이 이어진다. 69쪽 둘째 행의 "문쇼전(文昭殿) 됴석(朝夕) 상식(上食)과 모든 공봉(供奉) 호마"부터 별도의 착 제1칙 이다 여기서 항을 바꿔칙을 나누어야 한다.

5 권지이, 제107칙과 제108칙 사이, 114쪽.

권지이 114쪽 7행의 "를 비셜학고" 위에 문양이 찍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찍힌 것이므로 지워야 한다. 제107칙 내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단락을 나누지말아야 한다.

6 권지삼, 제15칙, 24쪽

24쪽 첫 항 중간 부분의 "셰종됴의 의금비 궁인이"부터 새로운 칙으로 나누어 야 한다. 이는 제15칙이 된다. 이를 "소대부 기가지셜을"로 시작되는 제14칙의 기사에 이어 단락을 나누지 않은 채 연달아 필사해 놓았는데, 이는 착오이다 한문본을 통해 볼 때 귀속되는 항목마저 다르다. 제14칙은 「法禁」에 속하는 것이고, 뒤의 제15칙은 「刑獄」에 분류된다.

³⁴⁾ 국문본의 매 칙 번호는 필자가 매긴 것이다. 이하도 그러하다. 그리고 이하 '쪽 번호'는 국회도서 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파일에 매겨져 있는 것을 그대로 따랐다. 이 이미지파일은 책 표지가 제1쪽이기 때문에 본문 첫 면은 제2쪽이 된다

7 권지삼, 제19칙과 제20칙, 29~30쪽 위의 2 및, ③과 같은 경우이다.

8 권지삼, 제66칙과 제67칙 사이 87쪽

87쪽 제5행의 "(그) 루다 호고" 위에 문양이 찍혀 있다. 그러나 이는 제66 칙 내에서 이어지는 문장이므로 지워야 한다. 새로운 칙이 아닌데 단순 실수로 잘못 찍은 경우이다.35)

2. 한문본 대비 구성 체재 및 選譯 방향

『대동휘찬』 국역본에 뽑힌 기사는 총 344칙이다. 각 권별 기사 수는, 권지일 116칙, 권지이 123칙, 그리고 권지삼에 105칙이 실려 있다. 한문본과의 대조를 통해 각 部門별 수치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君道門 123칙, 臣道門 41칙, 吏部門 13칙, 戶部門 4칙, 禮部門 61칙, 兵部門 3칙, 刑部門 22칙, 工部門 15칙, 人事門 62칙. 이들 選譯 기사 344 칙에 임의로 번호를 매기는 가운데 한문본과의 대비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36)

| 권 차 | 칙 번호 | 한문본 대비 항목명 | 칙수 | 쪽 | 참고 | 권 차 | 칙 번호 | 한문본 대비 항목명 | 칙수 | 쪽 | 참고 |
|--------|-------|------------------|----|-------|-----|--------|-------|------------------|----|-------|-----|
| 권1 | 1~10 | 聖孝 | 10 | 2~10 | 君道門 | 권2 | 14 | 節義 | 1 | 21~22 | 臣道門 |
| 권1 | 11~16 | 后妃 | 6 | 11~17 | 君道門 | 권2 | 15 | 居官 | 1 | 22~23 | 臣道門 |
| 권1 | 17~21 | 廢妃 | 5 | 17~29 | 君道門 | 권2 | 16~19 | 善處事 | 4 | 23~30 | 臣道門 |
| 권1 | 22~24 | 後宮 | 3 | 29~32 | 君道門 | 권2 | 20~21 | 宦途 | 2 | 30~32 | 臣道門 |
| 권1 | 25~33 | 嚴宮闈 | 9 | 32~42 | 君道門 | 권2 | 22 | 致仕 | 1 | 33 | 臣道門 |
| 권1 | 34~37 | 儲嗣 | 4 | 42~51 | 君道門 | 권2 | 23~43 | 勳臣 | 21 | 33~39 | 臣道門 |
| 권! | 38~41 | 敦親 | 4 | 51~55 | 君道門 | 권2 | 44~45 | 權勢 | 2 | 39~40 | 臣道門 |
| 권1 | 42~53 | 宗室儀賓 | 12 | 55~67 | 君道門 | 권2 | 46~47 | 權奸 | 2 | 40~43 | 臣道門 |
| 권1 | 54~63 | 戚里 | 10 | 67~75 | 君道門 | | | 土禍 | | | 臣道門 |

³⁵⁾ 이 밖에 각 칙의 배열 순서가 한문본과 다른 것들도 일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는 생략한다.

³⁶⁾ 아래의 도표는 편집 형태에 따라 필자가 의도한 바와 달리 편집될 수 있다. 국문본 각 권책의 '칙 번호(수록 순서에 따름)'와 '쪽 번호'의 순서가 착종돼 보일 수 있다

| 권[| 64 | 治道 | 1 | 76 | 君道門 | | | 黨禍 | | | 臣道門 |
|-----|---------|------|----|---------|-----|----|-------------------------|-----|---|-------------|-----|
| 권1 | 65 | 勤政 | 1 | 76~77 | 君道門 | 권2 | 48 | 宦寺 | 1 | 44~46 | 臣道門 |
| 권1 | 66 | 經筵 | 1 | 77~78 | 君道門 | | | 銓法 | | | 吏部門 |
| 권1 | 67 | 寬仁 | 1 | 78~79 | 君道門 | 권2 | 49 | 官制 | 1 | 46~47 | 吏部門 |
| 권1 | 68~69 | 紀綱 | 2 | 79~80 | 君道門 | 권2 | 50 | 用人 | 1 | 47 | 吏部門 |
| 권! | 70~72 | 儉德 | 3 | 80~82 | 君道門 | | | 抑躁競 | | | 吏部門 |
| | | 斥玩好 | | | 君道門 | 권2 | 51~52 | 大臣 | 2 | 47~49 | 吏部門 |
| | | 敦敎化 | | | 君道門 | 권2 | 53 | 廟堂 | 1 | 49~50 | 吏部門 |
| | | 鎭人心 | | | 君道門 | 권2 | 54 | 講官 | 1 | 50~51 | 吏部門 |
| | | 軫民隱 | | | 君道門 | | | 啓沃 | | | 吏部門 |
| | | 愼賞罰 | | | 君道門 | | | 臺閣 | | | 吏部門 |
| 권1 | 73~75 | 惜名器 | 3 | 82~85 | 君道門 | 권2 | 55 | 諫諍 | 1 | 51~52 | 吏部門 |
| 권1 | 76~77 | 待前朝 | 2 | 85~86 | 君道門 | 권2 | 56 | 論劾 | 1 | 52 | 吏部門 |
| | | 崇儒 | | | 君道門 | 권2 | 57 | 宮僚 | 1 | 53 | 吏部門 |
| 권1 | 78~79 | 養士氣 | 2 | 86~88 | 君道門 | 권2 | 58 | 輔導 | 1 | 53~54 | 吏部門 |
| 권1 | 80~85 | 斥左道 | 6 | 88~95 | 君道門 | | | 文任 | | | 吏部門 |
| 권1 | 86~87 | 褒節義 | 2 | 95~98 | 君道門 | 권2 | 59 | 湖堂 | 1 | 54~55 | 吏部門 |
| 권1 | 88~97 | 禮臣工 | 10 | 98~105 | 君道門 | 권2 | 60 | 方伯 | 1 | 55~56 | 吏部門 |
| | | 待三司 | | | 君道門 | 권2 | 61 | 守令 | 1 | 56 | 吏部門 |
| 권1 | 98~107 | 優老 | 10 | 105~116 | 君道門 | | | 吏胥 | | | 吏部門 |
| 권1 | 108~109 | 符瑞 | 2 | 117~119 | 君道門 | | | 疆域 | | | 戶部門 |
| 권1 | 110~116 | 災異 | 7 | 119~123 | 君道門 | | | 田政 | | | 戶部門 |
| 121 | 110 110 | 9054 | , | 117 123 | | | | [堤堰 | | | 戶部門 |
| 권2 | 1 | 遇災修省 | 1 | 2 | 君道門 | | | 民賦 | | | 戶部門 |
| | | 悔悟 | | | 君道門 | | | 漕運 | | | 戶部門 |
| 권2 | 2~7 | 宮房 | 6 | 2~10 | 君道門 | | | 良役 | | | 戶部門 |
| | | 內司 | | | 君道門 | | | 貨幣 | | | 戶部門 |
| | | 國史 | | | 君道門 | | | 場市 | | | 戶部門 |
| | | 靖難 | | | 君道門 | 권2 | 62~64 | 祿俸 | 3 | 56~58 | 戶部門 |
| | | 臣道 | | | 臣道門 | 권2 | 65 | 恤經費 | 1 | 58~60 | 戶部門 |
| 권2 | 8~10 | 君臣際遇 | 3 | 10~15 | 臣道門 | | | 賑恤 | | | 戶部門 |
| | | 去就 | | | 臣道門 | | | 貨賂 | | | 戶部門 |
| 권2 | 11~12 | 忠義 | 2 | 15~21 | 臣道門 | 권2 | 70~78 | 廟社 | 9 | 66~79 | 禮部門 |
| 권2 | 13 | 氣節 | 1 | 21 | 臣道門 | 권2 | 67 69 ³⁷⁾ | 陵寢 | 6 | 61~65 66 | 禮部門 |

| | | | | | | | 79~82 | | | 79~85 | |
|----------|-------------------------|------|---|----------------|-----|----|-----------------------|------|---|-------------|-----|
| 권2 | 68 ³⁸⁾ 83 | 祭享 | 2 | 65~66 85~86 | 禮部門 | | | 制作故事 | | | 工部門 |
| | | 音樂 | | | 禮部門 | 권3 | 30~32 | 建置故事 | 3 | 41~43 | 工部門 |
| 권2 | 84~86 | 追崇 | 3 | 86~90 | 禮部門 | 권3 | 33~39 | 營建 | 7 | 44~51 | 工部門 |
| 권2 | 87~89 | 國恤 | 3 | 90~93 | 禮部門 | 권3 | 40~41 | 第宅 | 2 | 51~52 | 工部門 |
| 권2 | 90~92 | 喪制 | 3 | 93~96 | 禮部門 | 권3 | 42~44 | 服飾 | 3 | 52~55 | 工部門 |
| 권2 | 93~101 | 國婚 | 9 | 96~107 | 禮部門 | | | 器用 | | | 工部門 |
| 권2 | 102~109 | 典禮故事 | 8 | 107~117 | 禮部門 | | | 津船 | | | 工部門 |
| | | 朝體 | | | 禮部門 | | | 學問 | | | 人事門 |
| 권2 | 110 | 朝儀故事 | 1 | 117~118 | 禮部門 | 권3 | 45~47 | 孝友 | 3 | 55~58 | 人事門 |
| 권2 | 111~112 | 盛際故事 | 2 | 118~121 | 禮部門 | 권3 | 48 | 制行 | 1 | 58~59 | 人事門 |
| 권2 | 113~116 | 事大 | 4 | 121~125 | 禮部門 | | | 德量 | | | 人事門 |
| | | 詔使 | | | 禮部門 | | | 膽量 | | | 人事門 |
| 권2 | 117 | 使价 | 1 | 125~126 | 禮部門 | 권3 | 49~57 | 識慮 | 9 | 59~74 | 人事門 |
| 권2 | 118 | 交隣 | 1 | 126~127 | 禮部門 | 권3 | 58 | 鑑識 | 1 | 74~77 | 人事門 |
| | | 譯舌 | | | 禮部門 | | | 清儉 | | | 人事門 |
| | | 文廟 | | | 禮部門 | | | 奢侈 | | | 人事門 |
| | | 太學 | | | 禮部門 | | | 辭受 | | | 人事門 |
| | | 書院 | | | 禮部門 | 권3 | 59 | 高士 | 1 | 77~81 | 人事門 |
| 권2 | 119 | 科學 | 1 | 127~128 | 禮部門 | | | 豪放 | | | 人事門 |
| | | [考官] | | | 禮部門 | | | 家瓜 | | | 八爭门 |
| | | 諡法 | | | 禮部門 | | | 聰明 | | | 人事門 |
| 권2 권3 | 120~123 1~4 | 私家禮制 | 8 | 128~132 2~7 | 禮部門 | 권3 | 60~61 | 夙成 | 2 | 81~83 | 人事門 |
| | | 將帥 | | | 兵部門 | 권3 | 62~65 ³⁹) | 儀容 | 4 | 83~86 | 人事門 |
| | | 兵制 | | | 兵部門 | 권3 | 66~68 | 謙退 | 3 | 86~89 | 人事門 |
| | | 鍊武詰戎 | | | 兵部門 | | | 愼黙 | | | 人事門 |
| | | 征討 | | | 兵部門 | 권3 | 69 72 | 氏族 | 2 | 89~90 92 | 人事門 |
| 권3 | 5 | 修攘 | 1 | 7~8 | 兵部門 | 권3 | 70~71 73~79 | 家法 | 9 | 90~100 | 人事門 |
| | | 邊備 | | | 兵部門 | 권3 | 80 | 朋友 | 1 | 100~101 | 人事門 |
| | | 邊禁 | | | 兵部門 | 권3 | 81 | 風習 | 1 | 101 | 人事門 |
| | | 烽燧 | | | 兵部門 | 권3 | 82~84 | 禍福 | 3 | 101~105 | 人事門 |

| | | ØZnn | | | C 7000 | 71. | 0.7.0640 | 160 \ | _ | 10= 100 | 1 |
|----|-------|------|---|-------|--------|-----|-------------|-------|---|---------|-----|
| | | 軍器 | | | 兵部門 | 권3 | 85~8640) | 炎凉 | 2 | 105~108 | 人事門 |
| | | 城池粮餉 | | | 兵部門 | 권3 | 87~88 | 請託 | 2 | 108~110 | 人事門 |
| | | 馬政 | | | 兵部門 | 권3 | 89 | 處變 | 1 | 110~111 | 人事門 |
| | | 驛路 | | | 兵部門 | | | 嫌路 | | | 人事門 |
| | | 戰船 | | | 兵部門 | 권3 | 90 | 復讐 | 1 | 111~112 | 人事門 |
| 권3 | 6 | 武科 | 1 | 8~9 | 兵部門 | | | 文章 | | | 人事門 |
| 권3 | 7~14 | 法禁 | 8 | 9~24 | 刑部門 | 권3 | 91 | 書翰 | 1 | 112~113 | 人事門 |
| 권3 | 15~21 | 刑獄 | 7 | 24~31 | 刑部門 | | | 文集 | | | 人事門 |
| | | 恩法屈伸 | | | 刑部門 | 권3 | 92 | 碑誌 | 1 | 113 | 人事門 |
| 권3 | 22~23 | 竄謫 | 2 | 31~32 | 刑部門 | 권3 | 93~97 | 雜術 | 5 | 113~122 | 人事門 |
| | | | | | | 권2 | 6641) | | | 60 | |
| 권3 | 24~25 | 籍沒 | 2 | 32~33 | 刑部門 | رات | 98~99 | 靈異 | 8 | 122~124 | 人事門 |
| | | | | | | 권3 | 101~105 42) | | | 126~134 | |
| 권3 | 26 | 離婚 | 1 | 33~35 | 刑部門 | 권3 | 100 | 報應 | 1 | 124~126 | 人事門 |
| | | 降號革邑 | | | 刑部門 | | | 雜考 | | | 人事門 |
| 권3 | 27~29 | 伸寃枉 | 3 | 35~41 | 刑部門 | | | | | | |

앞서 한문본 『대동휘찬』은 도합 (169개 내지) 171 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문본에는 그들 항목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칙의 기사들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 것인지를 한문본과 면밀히 대조해 위와 같이 파악해 보았다.43 대조 결과, 국문본에 수록된 각 기사들은 일부 기사를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한 문본에서의 배열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는 위 도표의 '칙 번호' 순서를 보면 알수 있다. 또한 한문본의 어느 특정 部門만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9개 부문 전반에

³⁷⁾ 이 제69칙은 아직 한문 원문을 찾지 못했다. 그 내용을 고려해 일단「陵寢」에 귀속시킨다

³⁸⁾ 이 제68칙은 아직 한문 원문을 찾지 못했다. 그 내용을 고려해 일단「祭享」에 귀속시킨다

³⁹⁾ 이 넷 중 제63칙(84쪽)은 아직 한문 원문을 찾지 못했다. 그 내용을 고려해 일단「儀容」에 귀속 시킨다.

⁴⁰⁾ 이 둘 중 제86칙(106쪽)은 아직 한문 원문을 찾지 못했다. 그 내용을 고려해 일단「炎凉」에 귀속 시킨다.

⁴¹⁾ 국문본 권2(60쪽)에 있는 이 기사의 한문본 원문은「靈異」조에 실려 있다「영이」조로부터 뽑혀 번역된 나머지 기사들이 권3에 수록된 것과 달리 홀로 권2에 수록돼 있는 셈이다.「人事門靈異」 에서 選譯된 기사의 통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정리한다.

⁴²⁾ 이 다섯 중 103~105칙(124~134쪽)은 아직 한문 원문을 찾지 못했다

⁴³⁾ 단, 몇 개 항목의 7개 기사에 대한 한문 원문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 도표상의 수치 중 어떤 것은 향후 달라질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서 선별한 편이다. 즉 한문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가운데 곳곳에서 344 칙을 골라 거의 그 순서대로 번역했던 것이다. 다만, 이 국문본의 저본이 된 한문본은 '人事門'이 君道와 臣道에 이어 세 번째에 편재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위치한 이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문본의 171개 항목 가운데 10칙 이상의 기사를 뽑은 항목은 聖教(友愛附), 宗室儀賓, 戚里, 禮臣工, 優老, 勳臣 등 6개이며, 70개 항목에서는 1칙의 기사도 뽑지 않았다. 부분별로 보면, 君道門에서 123칙이나 되는 기사를 뽑았으며, 戶部門와兵部門에서는 각각 4칙과 3칙으로 가장 적게 선별했다. 10칙 이상이 번역된 6개항목 가운데「勳臣」조를 제외하면 다 君道門에 속해 있는데, 이는 애당초 한문본에 君道門이 상하로 나뉘어 있을 만큼 분량이 제일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44) 동시에 번역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자가 어떤 시각에서 어떤 기사들을 위주로 選譯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한문본 대비 하나의 항목에서 대략 여덟 칙 이상을 뽑은 경우와 하나도 뽑지 않은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특히 문학적으로 매우 중시할 만한 점이 엿보인다.

우선, 국문본에 실린 각 칙의 기사들은 전반적으로 독자가 권계와 교훈을 얻고 동시에 역사지식과 교양을 쌓는 데 적합한 왕실과 유명 사대부들의 삶에 얽힌 일 화가 주류를 차지한다. 단 한 칙의 기사도 번역하지 않은 '항목'이 주로 戶部門와 兵部門에 몰려 있음도, 이같은 번역자의 시각을 엿보는 데 있어서 참조할 만한 점 이다. 따라서 대체로 '문학적 독서 취향에 더욱 걸맞게 걸러진 것이 국문본이랄 수 있다. 애당초 한문본 『대동휘찬』은 類書 내지 百科全書로 태어난 책인데, 이에 비해 국문본은 그러한 일종의 雜史的 성격을 대폭 소거시킨 셈이다.

類聚書로서의 분류 체재를 무시한 점을 상기함은 그래서 중요하다. 원본의 분류 체재는 물론이고 출전까지 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유서 본연의 성격을 사실상 잃 은 것이란 점에서 크나큰 차이를 지닌다. 이를테면 국문본은 한문본이 지닌 유서 로의 '검색 기능'을 배제한 채 다른 용도로의 탈바꿈을 꾀했던 것이다 그 내용면 에서 더욱 君臣의 일화 위주로 재편된 것도 기실 장르적 변신을 시도한 것으로 평

⁴⁴⁾ 항목도 총 37개로 가장 많다. 앞서 살핀 한문본의 <이본 현황 및 구성 체재>를 참조할 것.

가된다. 실용적 辭書에서 문학으로의 이동이자, 역사에서 문학과 역사 양자가 교 섭·변주하는 방향으로 옮아간 것이다.

덧붙여 지적할 점은, 역자가 의도했든 안했든 選譯 편찬의 방향이 이같은 이상, 이는 이 국문본을 대하는 이후의 독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국문본에 대한 장르의식이나 독서 태도, 즉 그 소통 경향 자체가 類書로 읽는 시각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짐은 물론이고, 종종 역사로부터마저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게 될 것이다. 역사와 유서의 혼혈 씨로 태어나 문학적 이야기책으로 자라난 셈이다.

3. 번역 양상과 특징

국문본에 뽑힌 매 칙은 기본적으로 完譯(혹은 全譯)이다. 특별히 한문본 소재어떤 한 칙의 기사를 역자 임의로 抄譯하거나 원문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지 않은 것은 몇몇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원문에 상당히 충실했을 뿐 아니라 번역을 썩 잘한 수준이다.

국문본의 번역 양상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逐字譯 의 경향이 유달리 두드러진 다는 점이다. 축자역이 많다는 것은 곧 직역 위주의 번역임을 뜻한다 이와 함께 원문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건너뛰는가 하면 일부 문장이나 어구를 빠트린 채 번역한 경우가 간혹 나타난다. 이 밖에, 역자의 의도에 따라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경우나 단순 오류들이 약간 수 확인된다. 이하 구체적 용례를 들어 이를 살펴보기로한다. 필요에 따라 한문원문을 함께 들고 뜻풀이를 겸한다.45)

1) 逐字譯의 다양한 예

O 나는 미양 제능(齊陵 40의 <u>영양(</u>榮養)을 다 티 못 하 를 한 도라 (권지일, 제2 칙, 3쪽

⁴⁵⁾ 이하, 한문본 택스트는 장서각 소장 25책본 『대동휘찬』과 10책본 『휘언』을 활용하였다. 이하에서 드는 한문 원문은 이들에서 다 확인 가능하다. 이 두 이본은 善本일 뿐 아니라 매 칙마다 내어쓰기 형태로 전사돼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⁴⁶⁾ 齊陵: 조선 태조의 妃인 神懿王后의 능

-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 영양(榮養): 부모를 영화롭게 잘 모심
- 원경왕휘 승하호시매 세종이 상(床)을 브리시고 점(苔)의 업디샤 일야의 통 곡호시고 진선(進欝 47)티 아니호시니 좌위 フ마니 <u>유지(油紙)로써 연</u>디 … 모휘(母后) <u>구질(</u>遘疾)호시매 무춤내 효험을 엇디못호니 (권지일, 제3칙, 3~4 쪽)
 -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 졈(苫): 거적.
 - 구질(遘疾): 질병을 만나다, 병이 들다
- 영응대군 염(琰)이 셰종의 <u>종인(鐘愛</u>) 호시던 바로써 무<u>활</u> 撫卿 호시미 더옥 지극호샤 (권지일, 제7칙, 7쪽)
 -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 죵이(鍾愛): 여기서의 '鍾 은 ' 讚 모으다)' 의 뜻으로, ' 鍾愛 란 사랑을 모으다, 즉 극진히 사랑함을 뜻함
- 명상공 유성의 손주 제현이 슉휘공쥬를 상(尚) 호야 인평위 되니 공이 더옥 <u>외신</u>(畏慎) 호믈 더호야 일죽 공쥬드려 닐너 왈 (권지일, 제50칙, 63쪽) ¶ 鄭 相公維城之孫齊賢 尚淑徽公主 爲寅平尉 公益加畏慎 嘗謂公主曰 (「宗室儀賓」)
 -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 샹(尚): '공주에게 장가들다'의 뜻. 천자의 딸을 취하는 것을 '尙'이라 함.
- 영묘⁴⁸⁾ 됴의 좌샹 황희 <u>모우(母憂</u>) 룰 <u>명(丁)</u> 호매 <u>되(代)</u> 룰 내디 아니호고 수월 후 <u>긔복(</u>起復) 호야 다시 빈(拜) 호니 (권지일, 제89칙, 98쪽) ¶ 英廟朝 左相黃 喜 丁母憂 不出其代 過數月起復 復拜之 (「禮臣工」)
 -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 모우(母憂): 모친상.
 - 뎡(丁): 당(當)하다, 만나다.
 - 긔복(起復): 喪中에 있는 사람이 탈상하기 전에 다시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이름.

⁴⁷⁾ 進饍: '進膳'과 같음

⁴⁸⁾ 여기서의 '영묘'는 영조가 아니라 世宗을 가리킨다.

- 갑인 뉵월의 대뇌 이덩당(熙政堂) 년못 가온되 년화의 <u>병체(</u>並蔕) 훈 쟤 잇거 돌…익년의 인경왕휘 <u>샹빈(</u>上賓) 호시고 임슐 フ울의 취미뎡 디듕(池中)의 또 이 옷치 잇더니 계히의 명성왕휘 <u>녜쳑(</u>禮陟) 호오시니라 (권지일, 제116칙, 123쪽) ¶ 甲寅六月 大內熙政堂池中 有蓮花並蔕者…翌年 仁敬王后上賓 壬戌 秋 翠微亭池 又有此異 癸亥 明聖王后禮陟 (「災異」)
 -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 병체(並帶): 꽃받침을 겸하다, 꽃받침 하나에 꽃이 두 송이.
 - 샹빈(上賓): 날아올라 하늘의 빈객이 된다는 뜻에서, 임금이나 왕후의 죽음을 이름. '賓天'과 같은 말
 - 녜쳑(禮陟): 임금이나 왕후의 죽음을 이름 '昇遐 와 같은 말
- 뎡녕부스 쥐슝이 <u>입됴거가</u>의 <u>근칙(</u>謹飭) 호미 과호더니 (권지이, 제15칙, 22 쪽) ¶ 鄭領府使載嵩 立朝居家 過於謹飭 (「居官」)
- 인조 갑신의 <u>상위(</u>相位) 궐(闕)이 :시되 정경(正卿)의 가히 복성(卜相) 호얌 죽호[호] 니 업논디라 묘당(廟堂) 49)이 아경(亞卿)의 싸 도 : 믈50) 청호야 샹이 허호시니 어시의 부제호 니무(李榮) 51)로써 형판의 <u>슈의(</u>首擬) 호고 셔경우 (徐景雨)로 버금호얏더니, 52) 셔공이 <u>슈점(受點)</u> 호고 인호야 <u>입성(</u>入相) 호니라 (권지이, 제50 최, 47 쪽) ¶ 仁祖甲申 鼎位有缺 正卿之列 無可擬於卜相者 廟堂 請選於亞卿而陞之 上許焉 於是 以副提學李榮 首擬刑判 以徐景雨副之 徐公受 點 因而入相 (「用人」)

⁴⁹⁾ 묘당(廟堂): 여기서는 조정(朝廷)을 뜻함.

⁵⁰⁾ 도도다: '陞'에 대한 대역어

⁵¹⁾ 한문본에는 '李ू(이목)'으로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무'가 아니라 '이목'이 맞다. 인조조의 문신 이목(1572~1646)을 가리킨다. 본관이 전주로, 자는 문백(文伯), 호는 송교(松郊)이다 『송교유고』가 전하며, 여기에 그의 행장이 실려 있다. 한문본을 보면 이 기사의 출전도 「李松郊行狀」으로 되어 있다.

⁵²⁾ 버금호다. '副'에 대한 대역어. 으뜸의 다음을 뜻하는 말.

-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 복상(卜相): 정승을 새로 뽑다
 - 슈의(首擬): 제일 먼저 물망에 오름
 - 슈점(受點): 낙점(落點) 당하다. 점 찍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수점 이되는 것.
- ▷ 대체 축자역어53)
 - 샹위(相位): 원문에는 '鼎位'로 되어 있음.
 - 궐(闕): 원문에는 '缺'로 되어 있음.
- 선묘됴 인슌왕후 상(喪)의 <u>상교(</u>上敎)를 인호야 휘局 일죽 <u>남죠청뎡(</u>臨朝聽 政)호시므로 써 군하(群下)의 <u>복삼년(</u>服三年) 홀 의논이 :시나 (권지이, 제 91칙, 95 면) ¶ 宣祖朝 仁順王后之喪 因上敎 以后嘗臨朝聽政 有群臣爲服三年 之議 (「喪制」)
 - ▷ 대체 축자역어
 - 군하(群下): 원문에는 '群臣'으로 되어 있음.
- 아동(我東) 혼녜 <u>노무(</u>鹵莽) 호야 듕고 이릭로 스부개(土夫家) 다 혼인날 져녁 의 부가(婦家) 의 <u>위금(</u>委禽) 호야 (권지이, 제120 칙, 128 쪽) ¶ 我東婚禮鹵莽 中古以來 土夫皆於婚夕 委禽於婦家 (「私家禮制」)
 -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 노무(鹵莽): 거칠다, 조잡하다, 소홀하다.
 - 위금(委禽): 혼례의 납채에 기러기를 보내는 일. '禽'은 기러기를 이름.
- 듕묘됴의 일죽 <u>원묘(</u>原廟) 신판(神杨) 일위를 일흐니 사름이 다 <u>하빈(</u>下輩)의 <u>전관(</u>殿官)을 모함코져호야 <u>호민가(</u>下民家) 의심호야 (권지삼 제16칙, 25쪽)
 - ¶中廟朝 嘗失原廟神板一位 人皆疑下輩 欲陷殿官 (「刑獄」)
 -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 원묘(原廟): '原'은 '二重 의 뜻으로, 종묘의 正廟가 있는 뒤에 다시 세우 는 廟를 가리킴.
 - 젼관(殿官): 사당지기나 묘지기를 이름.

⁵³⁾ 축자번역이되 한문원문과 다른 한자음(어)으로 바꿔 놓은 경우를 가리킨다.

○ 인조 <u>기옥(</u>改五) 후의 <u>낭일(</u>曩日) 경수를 어즈러인 쟈의 쥐를 의논홀쉬 임의 죽은 쟈 <u>슈눅(</u>追勠 흐므로 청호는 쟤 잇거놀 인뫼 <u>취슈(</u>揮手) 호야 골오샤딩 광히의 형벌이 참혹호야 추마 니루디 못홀디니 그 박회[轍]를 볿고져 아니호 노라 호시더라 (권지삼, 제19칙, 29쪽 ¶ 仁祖改玉後 議定曩日亂政者之罪 有 以追戮已死爲請者 仁祖揮手止之曰 光海戮尸之刑 慘不忍言 予不欲蹈其轍耳 (「刑獄」)

▷ 주요 축자역어 뜻풀이

- 기옥(改玉): 인조반정(1623년)을 이르는 말. '개옥(改玉)'은 의미상의 한국 한자어.
- 츄뉵(追黎): (이미 극형을 받았거나 죽은 자를) 거슬러 올라가 다시 죽인 다는 뜻으로, '부관참시(剖棺斬屍'와 같은 말

국문본 『휘언』에 나타난 축자번역의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이상의 용례로 족하다고 본다. 사실 이상에서 든 예문들은 무작위로 뽑은 것일 뿐, 거의 모든 각 칙의기사들에서 이상과 유사한 축자번역 양상이 엿보인다. 그렇듯 한문원문의 뜻을 풀이하지 않고 단지 국문 한자음으로 대체한 어휘들이 많아—종종 풀어 쓸 수가 없거나 그럴 필요도 없지만—, 국문본만을 갖고는 독해가 난해한 편이다. 몇몇 한글번역본 아사총서들에 비해서도 축자역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자료로 보인다. 이를 궁중 및 사대부가 여성들의 독서용 번역본으로 가정한다면, 고급 수준의 한자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춘 그런 부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상당수 축자역어의 경우 이를테면 한자문화권의 전문용어 내지 궁중이나 지식층 사대부 사회의 생활문화 속에서 소통되던 것들이다. 이는 국문본 『휘언』이 옛 고급 구어의 실상과 용례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문헌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한다. 이 국문본에서 그러한 어휘들을 다 간추리면 실로 부지기수다

물론, 어떤 하나의 한자어가 일률적으로 축자역어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鍾愛'라는 한자를 그냥 "죵이-ㅎ다"라고 축자 번역했다가도 다른 곳에서 는 "〈랑ㅎ다"라고 풀어서 번역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하나의 기사 내에서도 그러한데, '사냥꾼'이란 뜻의 '田人'을 "산영ㅎ는 사람"이라고 번역했다가 다시 그냥 "젼인"이라고 쓰기도 하였다.54) 그런가 하면 '대체 축자역어' 현상 또한 위에 든

것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拜 를 '봉(封)- ㅎ 다 로, '요리샤 를 뜻하는 '庖人'을 '됴인(竈人)'으로, '금고'를 뜻하는 '帑 을 '탕장(帑繭)'으로, '轍'를 '반급'(頒給 선물로 하사하다)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비록 '번약'을 한 것이긴 하나, 단지 다른 축자역어로 '대체 했을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축자 번역이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같은 현상 또한, 이러한 부류의 한자야(축자역어)를 일상생활에서 常用했던 당시 사람들의 언어습관에서 기인했을 터이다.

2) 한문원문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지 않은 경우

O 권지일, 제83칙, 92쪽

한문원문 대비, 끝부분 32字를 번역하지 않았다 한문본 소재 해당 부분을 보면 "中廟已卯年間···"으로 시작되는 32자의 문장이 마치 새로운 칙의 기사처럼 연달 아 서술돼 있다. 때문에 이하 32글자를 의도적으로 번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O 권지이, 제6칙, 7~10쪽.

한문원문 대비, 끝부분 14글자를 생략한 채 마쳤다. 한문본 소재 해당 칙에는 "末世處宗戚之位者 宜隨事省察也" 14자가 더 있다.

O 권지이, 제84칙, 87~89쪽

한문본「追崇」조에 있는 해당 칙은 "宣廟己已春"으로 시작되는데, 이 서두부터 260여자의 원문을 건너 뛴 다음 "初 宣廟入承" 부분부터 번역하였다 "션묘 입승대통 호시미"로 시작해 한문원문 190자 정도를 번역하고 마쳤다. 게다가 한문본에는 그 뒤에도 100자 정도가 더 있으나 국역본에서는 이의 번역 또한 생략하였다. 한문본 소재 해당 칙은 비록 유기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분리 가능한 3편의 고사가 묶여 있는데, 역자는 이 가운데 중간 부분만을 抄譯한 셈이다

O 권지삼, 제35칙, 46쪽

한문본 대비, 서두 4글자를 번역한 다음 165자 가량을 건너뛴 채 이어서 번역하였다. 즉, "太祖御宇(태조대왕이 어우호사)"에 이어 서술된 "下敎八道方伯"부터 "太祖大喜 待以師禮"까지의 전반부를 번역하지 않았다 이 전반부에는 팔도 방백

⁵⁴⁾ 〇 제(褆 양녕대군의 이름) <u>산영호는 사름[田</u>八)을 거느리고 개 獵狗 룰 시러 가 참예한더니 이 윽고 <u>전인(田</u>人)이 름성[獸]을 드리고(권지일, 제6칙, 6~7쪽); '田人'에서의 '田은 '畋 사냥하다'의 뜻임.

들이 태조의 명에 따라 무학대사를 물색하는 과정이 서술돼 있다. 후반부는 태조가 무학대사를 스승의 예로 맞아 그의 말에 따라 한양을 도읍지로 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역자는 이 후반부의 유명 일화만을 抄譯하였다.

O 권지삼, 제40칙, 51쪽

한문본 대비, "造家地 大君公主三十負"로 시작되는 전반부의 번역을 생략하고, "家舍 大君六十間"으로 시작되는 후반부만을 번역하였다. 한문본 소재 해당 기사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상 서로 분리되는데, 국문본에서는 그 중 하나만을 번역하 것이다.

3) 語句를 빠트리거나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경우

- 제(褆)55) 젹(炙)을 <u>씨브며</u> 술 마시기를 주악(自若)히 혼대 (권지일, 제6칙, 7쪽) ¶ 褆 撮炙飲酒自若 (「聖孝(友愛附」)
 - ▷ 설명: '撮(취하다, 손으로 집다)'을 '뻡다(씹다)'로 번역하였다. '撮 에 대한 새로운 對譯語라기보다는 意譯한 경우로 이해된다.
- 효미 <u>덧덪이</u> 제 공쥬룰 경계호야 골오샤티 (권지삼, 제1칙, 2쪽) ¶ 孝廟嘗戒 諸公主曰 (「私家禮制)
 - ▷ 설명: '嘗'을 '덧덧이(떳떳이, 항상)', 즉 '常'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嘗'과 '常'은 '일찍이'라는 뜻으로는 통용되는 글자이나, '嘗'이 '떳떳이(항 상)'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번역된 예는 매우 드물다. 단순 오역인지, '嘗'에 대한 특이한 대역어로서의 용례인지, 아니면 혹'常으로 되 어 있는 이본을 번역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 성미 호 왕주를 소랑호샤 과호신 일이 만흔서 오뷔(烏雨 50) 의논호대 ②상이 장녕을 브론샤 글 호 귀를 써 주어 골오샤디 "세상사름이 호가디로 ④서리 후 국화를 소랑호믄 이 쏫 픤 후의 다시 쏫치 업소밀시니라" 그 사름이 눈 물을 씻고 나왓더니 오래디아냐셔 상이 승하호시다 (권지일, 제45칙, 59쪽) ¶ 成廟鍾愛王子一人 多有過僻之事 烏府論之 ②上命召城上所入掌令 入謁 上書一句而賜之曰"世人共愛迎霜前菊 此花開後更無花"其人拭淚而出 未幾 上

⁵⁵⁾ 제(褆): 양녕대군의 이름

⁵⁶⁾ 오부(烏府): 사헌부의 별칭

昇遐 (「宗室儀賓」)57)

- ▷ 설명: ②"上命召城上所入掌令 入謁"에서, "城上所"58)와 "入謁"을 번역하지 않고, 단지 "샹이 쟝녕을 브루샤"로 번역하였다; ④의 경우 "霜前菊"을 '서리 전 국화'가 아닌 "서리 후 국화"라고 번역하였다. 표현을 더 적절하게 고쳐서 번역한 셈이다.
- O 슉묘 신유의 (권지이, 제64 칙 58 쪽) ¶ 今上
 - ▷ 설명: 한문본의 "今上"을 "슉묘 신유의"로 밝혀서 번역했다 한문본과 달리 각 칙의 출전을 밝혀놓지 않은 문제가 이로 인해 해결된다. '今上'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원 출전을 알아야 하는데, 한문본 소재 이 기사에는 "閑居漫錄"이라고 밝혀져 있어『한거만록』이 숙종조에 鄭載崙이 찬한 책임을 아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今上'을 그냥 '금상'이라고 번역하면서 출전을 밝히지 않으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슉묘 신유의"라고 고친 것이다.59)
- 성종됴의 도라가는 뉴구국 수신이 (권지이, 제118 칙, 126 쪽) ¶ 近日 琉球使 之還也 (「交隣」)
 - ▷ 설명: '近日'을 '성종조'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한문본 소재 이 기사에는 원 출전이 『筆苑雜記』로 밝혀져 있어서 '近日'을 '성종조'로 파악하 는 데 문제가 없으나, 국문본에서는 출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 슉묘 긔미의 남약천구만이 좌윤을 향야 (권지삼, 제13칙, 19쪽) ¶ 肅廟己未 爲左尹時 (「法禁」)
 - ▷ 설명: 약천 남구만이라는 이름이 추가되었다. 한문본 소재 해당 기사에는 "藥泉集"이라는 출전이 명시돼 있어 '左尹'의 주체가 밝혀져 있지

⁵⁷⁾ 이 성종 관련 고사는 『계서야담』에도 '왕자'가 '여자'로 바뀐 채 실려 있다. 『대동휘찬』에는 원출전이 "五山小說"로 밝혀져 있다. "오산소설"은 車天輕(1556~1615)의 『五山說林』을 가리킨다 '필기·잡록·야사·유서·야담'의 교섭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58) &#}x27;城上所'란, 사헌부의 관리가 궁궐문 위에서 궁궐에 드나드는 백관을 살피던 곳을 말한다

⁵⁹⁾ 다음도 그러한 경우이다. ○ 영묘 무신의 (권지이, 제43 칙 38 쪽 ¶ 今上戌申; ○ 슉묘 무오의 (권지삼, 97칙, 120쪽) ¶ 今上戌午; ○ 슉묘 경신 츈의 (권지삼, 제100칙, 124쪽) ¶ 今上庚申春

않아도 그가 南九萬임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전을 적지 않은 국문본의 경우 주체를 밝히지 않으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번역한 것이다. 이 또한 세심히 고려한 번역이랄 수 있다.

- 호 즁이 이셔 용뫼 겨집굿호디라 (권지삼, 제17 칙, 26 쪽) ¶ 近有一奴 容貌酷 類女奴 (「刑獄」)
 - ▷ 설명: '奴'를 '즁[僧]'이라고 바꾸어 번역하였다. '종'보다는 '중'이 알맞다고 여겨 짐짓 달리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袞(奴)'을 '즁'으로 필사한 것은 아닌 듯하다.
- 고려 뉵품 이상은 금을 씌고 이품 이상은 셔룰 씌고 일품 이상은 옥을 씌더니 (권지삼, 제44칙, 54쪽) ¶ 高麗 六品以上 帶金 四品以上 帶犀 二品以上 帶玉 (「服飾」)
 - ▷ 설명: '四品'이 '이품'으로, '二品'이 '일품'으로 바뀌었다.
- 경양파 익헌이 어려실 째 (권지삼, 제76칙, 94쪽) ¶ 余先君 幼時 (「家法」)
 - ▷ 설명: '余先君'을 '양파 정익헌'으로 밝혀서 번역하였다. 출전을 밝히지 않아 '余先君'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이로 인해 해결된다. 한문본 소재 해당 기사에는 출전이 『公私見聞錄』이라고 밝혀져 있어鄭載崙(1648~1723)의 선친임을 알 수 있다.

4) 단순 착오

- 세종됴의 큰 장시 이셔 (권지일, 제25 칙, 32 쪽) ¶ 睿宗朝 有大賈▷ 설명: '睿宗'이 '세종(世宗)'으로 바뀌었다
- 성종 신미의 (권지이, 제29 칙, 35 쪽) ¶ 成宗辛卯▷ 설명: '辛卯'가 '신미(辛未)'로 바뀌었다.
- 낙뎡 됴문효공 윤석이 집이 검천 이실시 (권지삼, 제47칙, 57쪽) ¶ 樂靜趙文 孝公錫胤 家在衿川 (「孝友」)
 - ▷ 설명: 조석원(趙錫胤60)이 '조윤석'으로 바뀌었다

⁶⁰⁾ 조석윤(趙錫胤): 1605~1654. 인조·효종 때의 문신 본관이 白川으로, 자는 胤之, 호는 樂靜齋 문과 출신으로 대제학을 지냈음.

- 성일진 간(侃)의 주는 화듕이니 (권지삼, 제62 착, 83 쪽) ¶ 成眞逸侃 字和仲 (「儀容」)
 - ▷ 설명: 성진일(成眞逸)이 '성일진'으로 바뀌었다. 成侃의 호가 '眞逸齋'이다.

IV. 결론: 국문본 『휘언』의 가치와 의의

① 類書가 한글로 번역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太平廣記諺解』의 자료적 가치가 높은 이유는 그 희소성 때문이기도 하다. 하물며 국내 편찬 유서가 한글로 번역된 사례는 그동안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61) 『대동휘찬』 이본군 중 하나를 번역한 국문본 『휘언』은 일단 국산 유서를 대상으로 한 번역본이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선 문물 위주의 유서를 번역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조야첨재』, 『조야회통』, 『조야기문』, 『국조고사』, 『정사기람』 (원전은 중국본) 등과 같은 거질의 야사총서 번역본들에 비해서도, 비슷한 자료적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성이 분명하다.

② 국문본 『휘언』은 한국의 국어생활사 내지 언어문화사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물론 이 때 '국어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음 운론적 측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국문본 가운데에서 다수의 한글고 어나 한자대역어 용례들을 추출해낼 수 있고, 나아가 전통문화가 잘 반영된 고전 적 표현방식들을 통해 당시 언어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서를 번역한 것이므로, 이같은 연구에 매우 적합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문본 『휘언』에서 가장 농후하게 드러나는 언어적 특징은 마치 '국사용어사전' 내지 '사대부생활언어사전'이라도 되듯, 궁중이나 사대부가와 같은 상층 생활공간에서 향유되었을 법한 언어생활사의 단면을 풍부하게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62)

⁶¹⁾ 국문본『휘언』이외에 類書 번역본으로는『萬寶全書』(17책, 필사본, 고려대 소장 정도를 들 수 있으나 이는 중국의 유서를 번역한 책이다. 한문원문과 諺解를 나란히 병기한 형태로, 중국의 역대 사적과 문물 관련 지식정보를 정리한 책이다. 중국에서는『萬寶全書』라는 이름의 유서가 여러 종나왔다고 하는데(최환, 앞의 논문, 69쪽), 그 중 어느 하나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 번역및 필사 시기는 20세기 초반으로 짐작된다.

⁶²⁾ 일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들 수 있다. 현대어 표기로 바꿔서 든다. 진성進鶴, 여차

이는 국문본이 왕실 및 사대부 일화 중심으로 편집돼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유명 고사들을 該譯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나 사대부가의 언어생활이 대거 반영 되었던 탓이다. 물론 역자는 단지 자신들의 생활언어를 구사했을 뿐이어서, 기실 번역본이라는 사실보다는 구어체 국문본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가운 데의 많은 한자어들은 구어체냐 문어체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설사 문어체 어휘라 하더라도 당시 일상구어 속에서 자유자재로 활용되었던 것만큼은 분명하 다. 한자어로서의 축자역어 또한, 그 대다수가 사대부 사회의 상용어였음이 인정 된다. 국문본『휘언』은 이를테면 상위계층의 고상한 언어생활을 엿보기에 적절한 고전자료인 셈이다. 그 풍부한 용례들을 두루 간추리는 일은 그래서 필요하다.

③ 대다수 유서가 그러하듯 한문본『대동휘찬』이본군은 일종의 역사서—주변역사로서의 別史 내지 雜史—이기도 했다. 25책본에 실린 < 自序》에서는、『春秋』의전통을 따랐음을 보이면서 은근슬쩍 역사서임을 표방하기도 하였다.63) 기실『대동휘찬』은 비록 자질구레하지만 능히 역사를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태어난것임이 십분 인정된다. 따라서 동시에 이는, 전근대인들의 이른바 도청도설, 즉 불완전한 역사서사로서의 小說 바로 그것이기도 했다. 국문본『휘언』은, 이미 다분히 그러한 거질의 유서 가운데에서도 궁중이나 사대부들의 생활공간 안팎에서 일어난 일화 중심으로 간추려졌다는 점에서, 국문야담집과의 거리가 별로 멀지 않다 국문본은 역사서사로서의 구어체 '古談冊'으로 소통된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이는다름 아닌 유서의 야담화 내지 필기잡록화 현상을 새롭게 보여준 것으로, 그 문학사적 의의가 자못 높다.

(廬次: 여막・빈소), 대언(代言: '承旨'의 다른 이름), 조사(詔使), 관반(館伴 館伴使, 즉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태평관이나 동평관에 임시로 둔 관원), 입근(入覲: 들어와 뵙다), 가행(駕幸: 납시다), 정부(政府: 議政府), 논집(論執: 주로 '臺漱이 時政을 論執하다' 식으로 쓰임, 제작(除職實職을 제수하는 일), 어인(御人), 鍾愛(사랑하다), 무홀(撫岬), 내탕(內帑: 궁중 금고), 탕장(帑藏금고), 어부(御府: 궁중・왕실), 승하(昇遐), 상반(上賓, 昇遐와 같은 말), 예착(禮陟: 昇遐와 같은 말), 복상(卜相: 정승을 새로 뽑음), 수의(首擬, 제일 먼저 물망에 오름), 수적(受點, 落點 당하다), 묘당(廟堂: 자주 '朝廷'의 뜻으로 쓰임), 입상(入相: 재상에 오르다), 원묘(原廟: 正廟 뒤에 이중으로 세우는 사당), 신판(神板), 전관(殿官: 사당지기), 개옥(改玉 인조반정을 이르는 말) 잠저(潛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금에 추대된 자가 왕좌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이나 그 기간), 화재(華制, 어우(御字: 임금의 재위 동안) 등등.

63) 余因病閉戶數月,遂採史氏之所述,諸子之所撰,分類成編,名曰大東彙纂 其於勸善懲惡,庶可有補, 而若其史之有闕文,則以俟後之君子焉 방대한 분량의 한문본을 굳이 한글로 選譯해서 큰 부담 없이 읽고 轉寫하기에 적절한 볼륨으로 빚어낸 것을 보면, 이는 필시 궁중이나 사대부가의 여성용이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한글로 된 종래의 역대 고사로서, 상층 여성들 사이에 일종의 교양독서물로 향유되었던 셈이다. 그 번역투로 미루어 지식층 남성 사대부의 번역일 확률이 거의 지배적인데, 이는 단순히 중간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귀감을 國證으로 풀어서 '가르치고자'한 취지에서일 것이다64)

참고문헌

『국조방목』(문과). empas-한국학지식(http://kdaq.empas.com/koreandb/history/ba ng).

『국학자료』 2. 장서각, 1972. 4.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經子部, 史部-1·3). 서울대 규장각, 1978~1983.

金時敏、『東圃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萬寶全書』. 17책, 필사본, 고려대 소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http://www.encykorea.com/encykorea.htm).

박재연, 『中朝大辭典』.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2.

『承政院日記』(규장각 소장 원본 제1080책, 국사편찬위원회 탈초영인본 제59 책. 원문DB, 국사편 찬위원회(http://sjw.history.go.kr/index.html).

『燃藜室記述』. 원문 DB 및 원문이미지, 민족문화추진회(http://oju.minchu.or.kr).

『英祖實錄』. 『CD-ROM 국역조선왕조실록』 제 집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원전교감 DB, 민족문화추진회(http://oju.minchu.or.kr/oju).

李德懋, 『靑莊館全書』(II). 『한국문집총간』 258, 민족문화추진회 표점영인본.

李楘,『松郊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任希聖, 『在澗集』. 『한국문집총간』 230. 민족문화추진회 표점영인본

正祖, 『弘齋全書』(VI). 『한국문집총간』 267. 민족문화추진회 표점영인본.

『韓國古書綜合目錄』. 국회도서관, 1968.

^{64) &#}x27;주변역사류'의 이같은 번역 취지를 아예 역자 序文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高宗의 명에 따라 번역된 국문본『정사기람』(尹用求 역, 80권 80책)을 들 수 있다. 이는 다음 논 문을 참조할 것. 안병희, 「왕실자료의 한글필사본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장서각』 창간회(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9).

- 『한국은행고서해제』. 한국은행, 2001.
- 김윤식,「類書에 대한 서지적 고찰」. 『국회도서관보』159, 국회도서관, 1982. 8, 14~20쪽
- 심경호,「조선후기 한자어휘분류집」에 관하여」 정양완(외), 『朝鮮後期漢字語彙檢索辭典』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97, 1~26 쪽
- 안대회,「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 후기 名物考證學의 전통』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267~288쪽.
- 안병희, 「왕실자료의 한글필사본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장서각』 창간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20쪽
- 장권열, 「우리나라의 고농서: 백과사전류를 중심으로」. 『농업연구소보』 25-1, 경상대 농업생명과학 연구원, 1991, 139~147쪽
- 최환, 「한국 유서의 종합적 연구(2): 한국 유서의 간행 및 특색」. 『중어중문학』 32, 한국중어중문학 회, 2003, 65~92 쪽

● 투고일: 2005. 10. 10.

◉ 심사완료일 : 2005. 11. 30.

 주제어(keyword): 유서(classified books), 백과사전(encyclopedia), 번역(translation), 대동휘찬(Daedonghuichan), 휘언(Huieon)